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50
----------	------

제출일자: 2017. 5. 11.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 2조)
-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청소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등 위원회 기능 규정
 - 위원회의 구성을 30명 이내로 규정
-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제 규정 (안 제 6조 ~ 제 7조)
 - 위원 위촉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라.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마.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위원 표창, 위탁 등에 관한 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3. 17. ~ 4. 6.) 결과 : 의견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광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

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행정7급 정 다 운
연 락 처	02-450-7166

교육지원과장 김 정 애